희망찬 미래를 여는 창원특례시의회

제119회 창원시의회(임시회)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'22.10.28.)

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

창원시의회

(기획행정위원회)

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2.10.28.(금)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. 10. 19. 창원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22. 10. 20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제119회 임시회 제1차(2022. 10. 28.)

기획행정위원회 상정·의결(의안번호 **제83호**)

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 설명자 : 문순규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행정처분 기준이 너무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각양각색의 위반행위를 통일적으로 처분하기에는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됨

○ 행정처분 당사자의 권익 보호와 행정처분 합리화를 위한 시책으로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등과 같은 불이익 처분을 할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배심원이 그 처분의 양정을 심의할 수 있게 함

나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조～제2조)

나. 적용범위 및 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3조~제4조)

다. (예비선정)배심원단 구성 및 직무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7조)

라. 배심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8조~제10조)

마. 배심원단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1조)

바. 배심원의 제척과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2조 및 제13조)

다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 (전문위원 김영현)

□ 입법목적(취지)

○ **본 제정 조례안은** 행정처분에 대한 공정성과 민주성,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의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

□ 주요내용

○ **안 제1조~제2조에서는**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“배심제”와 “처분부서”, “관리부서”, “처분당사자”에 대해 정의함

○ **안 제3조~제4조에서는** 행정처분배심제의 적용범위와 대상에 대해 규정함

○ **안 제5조~제7조에서는** (예비)배심원단의 구성과 배심원단장의 직무에 대해 규정함

○ **안 제8조~제11조에서는** 배심제의 운영안내, 신청방법, 심의결정과 의견 반영에 대해 규정함

○ **안 제12조~제13조에서는** 배심원단의 제척 사유와 비밀유지의 의무에 대해 규정함

○ **안 제14조**는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사항의 규칙 위임을 규정함

□ 종합의견

○ **본 제정 조례안은**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처분에 공정함을 기하고 처분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행정의 민주성, 투명성을 확보함이 목적임

○ <2021년 새올전자민원창구 행정처분 공개 기준>에 따르면 1년동안 창원시에서는 790건의 행정처분이 확정되었는데, 이들 대부분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세한 소상공인이라는 점에서 본 제정 조례안을 통해 처분당사자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, 시민의 권리구제 수단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으며

○ 시민의 심의 요청 기회가 추가로 마련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배심원의 의견 수렴을 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절차적 민주성이 강화된다는 점에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됨

○ 다만, 이미 권리구제와 이의제기를 위한 절차가 다수 존재하고 있어 효용 여부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

<행정처분에 대한 구제 방안 4가지>

① **의견청취** : 행정절차법 제22조에 의거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**청문**을 하거나 **공청회**를 개최하도록 명시
② **의견제출** : 행정절차법 제22조 및 제27조에 의거 청문이나 공청회 개최사항 외에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처분 전 **의견제출** 기회를 주도록 명시
③ **행정심판** : 행정심판법 제6조에 의거 시·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가능
④ **행정소송** :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하는 **재판절차**로 형사소송, 민사소송으로 구별

○ 또한 이미 유사한 조례를 제정한 일부 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 이후 실질적인 운영이 미비하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 또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

<타 자치자체 운영 현황>

연번	법령명	제정일	운영실태
1	경상남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	2009. 3. 26.	미운영
2	대구광역시 동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	2010. 1. 11.	미운영
3	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	2009. 3. 23.	연간 1~2건
4	경상북도 행정처분 배심원제 운영규정(예규)	2008. 2. 28.	연간 1~2건

4. 질의·답변 요지 : 기재 생략

5. 토론 요지 : 기재 생략

6. 심사 결과 : **원안 가결**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(부대의견, 건의 사항, 촉구사항 등) : 없음

참 고 관련 법령

행정절차법

제22조(의견청취)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. <개정 2014. 1. 28., 2022. 1. 11.>

1.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
2.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3.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가. 인허가 등의 취소 나. 신분 · 자격의 박탈 다.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

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. <개정 2019. 12. 10.>

1.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
2.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
3.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

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⑤ 행정청은 청문 · 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⑥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 · 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. [전문개정 2012. 10. 22.]

제27조(의견제출) ①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.

② 당사자등은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.

③ 행정청은 당사자등이 말로 의견제출을 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

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.

④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 [전문개정 2012. 10. 22.]

행정심판법

제1조(목적) 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(處分)이나 부작위(不作爲)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,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행정심판의 대상)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.

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.

제5조(행정심판의 종류)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취소심판: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
2. 무효등확인심판: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
3. 의무이행심판: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

행정소송법

제1조(목적)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·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,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행정소송의 종류)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. <개정 1988. 8. 5.>

1. 항고소송: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
2. 당사자소송: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
3. 민중소송: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
4. 기관소송: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. 다만,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.